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1호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가속화 되고 있어 전세계 197개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16년 11월 신기후체제를 위한 파리협정 비준, '18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개정안 발표를 하였으며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발효 기후변화협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산업혁명이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국제협약	1994	**우리나라 협약 가입(1993.12)** 전세계에서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
	1995	
	1996	
교토의정서 채택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체제 CDM,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비의무 국가로 지정	1997	
	1998	
	1999	**제2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2000	
	2001	
	2002	**교토의정서 비준** 비의무 감축국가로서 CDM 등 국제사회와 연계한 감축사업 추진 기반 마련
	2003	
	2004	
교토의정서 발효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평균 1990년 배출량 대비 5.2% 의무감축 체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신기후체제 도입에 합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체제	2011	
	2012	**녹색기후기금사무국(GCF) 송도유치** **국내 배출권거래법 제정**
	2013	
	2014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
파리협정 체결	201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파리협정 발효 Post-2020년 신기후체제 시작	2016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쇄제도 수송부문 운영기관 지정)**
	2017	
	2018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개정**
	2019	**제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확정**
	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확정·발표(2020.12)**
신기후체제 시작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약 3.15억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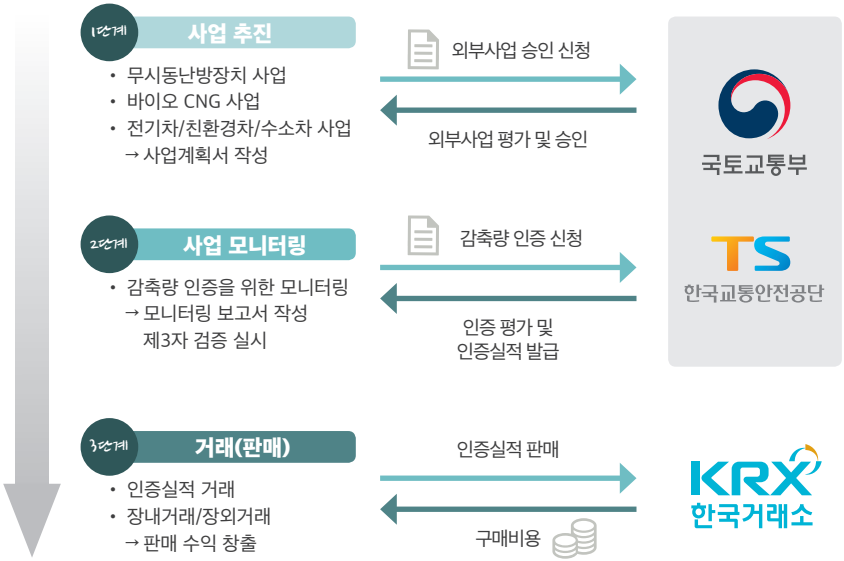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상쇄),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인증)등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활용

할당대상업체는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거래시장에서 거래

* **KOC(Korean Offset Credit)**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실적 (1KOC=1tCO_2-eq)
* **KCU(Korean Credit Unit)**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



외부사업 정의 및 등록 기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부사업의 정의와 외부사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사업 정의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외부사업 등록 기준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다음의 세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외부사업 등록 세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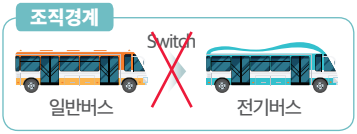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탄소감축실적이 의무적인 감축 이행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어야 함
-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 이상의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의한 사업
- 지속적으로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한 사업
- 배출량 인증위원회 승인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 사업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법) 이후에 발생된 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요건 만족
- 단순한 행태변화가 없어야 함
- 배출시설의 이전이 없어야 함
- 배출활동을 외부에 위탁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감축실적의 재정적 보상이 없어야 함

예 시

할당대상업체인 'A'업체의 사업장 조직경계 내 운송시설을 저배출 운송시설로 교체하는 사업

사업경계 측면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내 외부사업은 추진 불가



예 시

2010년 4월 14일 이전에 수행 사업 : A
2010년 4월 14일 이후에 수행 사업 : B

법률기반 측면



A사업 등록 추진 가능 : 감축량 인증 불가 (~17년까지)
B사업 등록 추진 가능 : 감축량 인증 신청 가능

주무관청 및 운영기관 역할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및 인증위원회 운영은 환경부이며, 관장기관(수송분야 : 국토교통부)이 외부사업 승인, 인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방법론, 사업을 관리 수행합니다.

(배출권 인증위원회 운영)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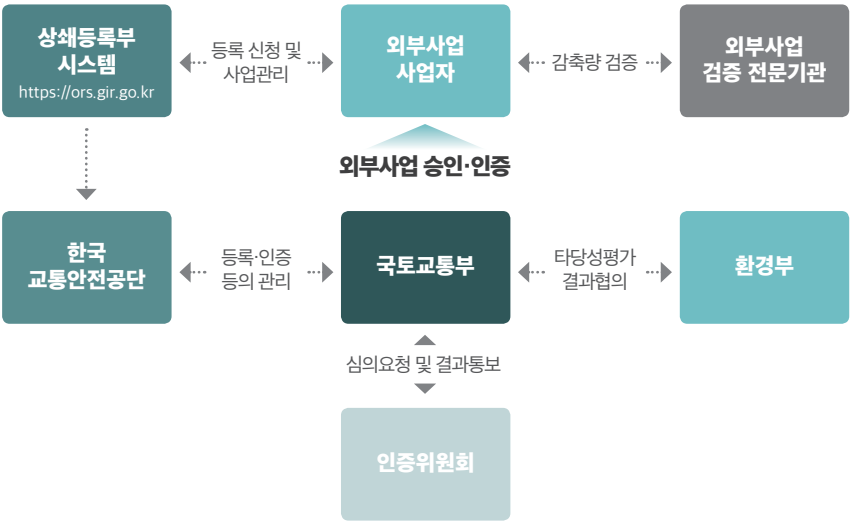
- 외부사업 총괄·조정
-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검증기관 지정·관리, 검증심사원 교육·양성
-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 방법론 승인 및 개정에 대한 협의
-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에 대한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

- 외부사업 승인
- 방법론 승인 및 개정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승인
- 상쇄등록부 관리·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 외부사업 방법론 검토
-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검토
- 외부사업 사업 및 방법론 관리



수송부문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 - 바이오 CNG

바이오 CNG 생산 및 자동차 연료 이용 사업의 방법론

바이오 CNG 생산 및 자동차 연료 이용사업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로부터 발생된 바이오 가스를 이용하여 바이오 CNG를 생산하고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여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CNG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반입 및 전처리 공정	혐기성 소화공정	바이오가스 정제공정	바이오 CNG 판매
고상 및 액상폐기물 처리 후 저장조 이동 **반입폐기물 음폐수, 음식물, 유기성 슬러지, 도출 잔재물 등**	가열혼합 및 혐기성 소화 **혐기성 소화에 의한 바이오 가스 발생**	바이오메탄 생산, 압축, 가스 저장 **순도 95% 이상으로 바이오 CNG 정제**	바이오 CNG 이송 및 대중교통 충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바이오 CNG 공급**

메탄 회피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배제하고
대중교통에 충전된 바이오 CNG량 만큼 온실가스 감축
기존 LNG기반 CNG를 바이오CNG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적용가능

바이오 CNG 이용 전 CNG차량이 아닌 타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차량을 바이오 CNG 이용을 위해 개조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적용불가

바이오 CNG 소매상 (CNG충전소 등)





적용불가

바이오 CNG 소비자 사업주체 (버스회사 등)

※ 본 방법론은 바이오 CNG **생산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바이오 CNG 이용자와 KOC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수송부문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 - 무시동난방장치

무시동 난방장치 장착을 통한 수송에너지효율향상 사업에 대한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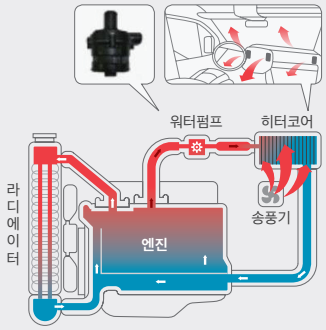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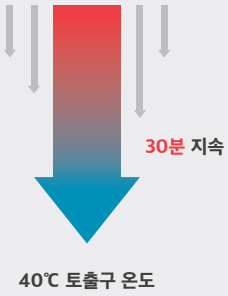
본 사업은 난방을 위하여 정차된 차량의 공회전에 따른 화석연료 소비량을 무시동난방기의 도입을 통해 절감하고, 이로인한 연료 절감량 만큼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설정

무시동 난방효과 지속

고온의 냉각수(98℃)를 워터펌프로 순환,
택시에 장착된 송풍기로 따뜻한 바람을 실내로 유입시켜 난방을 유지

무시동 난방장치 작동원리





방법론 적용 가능 조건

- 무시동난방장치 외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환경(법률, 세금 등) 및 설비는 변하지 않음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승객운송용 또는 화물운송용 차량에 적용
- 공회전 제한 횟수 및 시간을 지속적 · 전자적 측정 · 기록하는 장치 설치

방법론 적용 불가 조건

- 공공 교통수단 목적으로 출고된 차량이 LPG, CNG로 개조한 경우
- 무시동난방장치 외 온실가스 감축 및 저감효과 미포함
- 사업대상의 중복참여로 감축실적 중복산정 불가

주요사항

- 사업 차량의 무시동난방장치 가동시간은 과거 공회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수송부문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 - 전기차

전기 차량 도입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 사업의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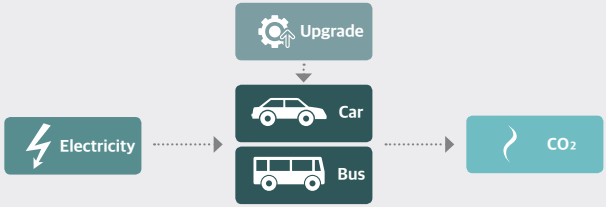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 전, 후 동일한 운송서비스를 제공/이용

운송 서비스 공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전기자동차의 운영



방법론 적용 가능 조건

- 기존 엔진(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의 화석연료 사용이 입증 가능한 사업
- 사업 전, 후 동일한 운송서비스(여객, 화물운송, 개인소유 등)를 제공/이용하는 사업
- 사업 전, 후 동일 종류의 차량으로 편차는 20% 이내이어야 함
- 사업활동 차량 배터리는 사용 및 폐기와 관련된 국내 규정을 준수해야함
- 기존 엔진(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의 폐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누출량을 고려

방법론 적용 불가 조건

- 엔진(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화석연료 기반의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하는 사업
- 엔진(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화석연료 기반의 차량을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는 사업
-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사업내용은 관련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 대체되는 차량 및/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이 중고 또는 튜닝 차량인 사업
- 수소전기자동차를 도입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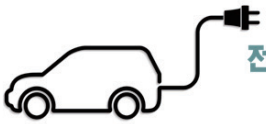
추가성 입증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기준 동일 종류의 전기 차량 국내 보급율이 5%이하임을 입증

전기차 방법론 - 베이스라인 차량 선정 프로그램

사업자가 신규 전기차량 도입 시, 베이스라인 화석연료 기반 차량 선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서 제작·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베이스라인 차량 선정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기 차량도입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 사업의 방법론

Tool to identify the baseline scenario for new EV

사업 차량 모델

아이오닉전기|N(A/T)

사업 트럭 & 버스 모델

기아 봉고3 전기 1톤 2WD 초장축 킹캡 GL (A/T)

사업 트럭 & 버스 모델

ZAPPY

선정 프로그램 가이드

STEP 01
SORT
자동차관리법 상의 차량 종류가 동일한가? (승용, 승합, 화물 등)

STEP 02
SIZE
자동차관리법 상의 차량 크기가 동일한 범주인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

STEP 03
PS
차량의 최고출력의 차이가 20% 이내인가?

STEP 04
WEIGHT
공차 중량의 차이가 20% 이내인가?

STEP 05
PASSENGER
차량의 탑승인원이 정확히 일치하는가?

STEP 06
TRANSMISSION
차량의 변속 방식이 일치하는가?(자동, 수동)

STEP 07
WHEEL DRIVE
차량의 구동 방식이 일치하는가?(FF, RR 등)

STEP 08
SORT BY MENU
차량 제조사에서 분류하는 차량의 종류가 유사한가? (SUV, 세단 등)

STEP 09
HIGH FUEL EFFICIENCY
남은 대안 중 연료소비량(km/L)이 가장 높은 차량

- 전기차량의 모델 선택 후 단계별 해당 차량 선택
- 최종 단계에 남음 차량 중 연료소비량이 가장 높은 차량으로 선택(보수적 측면)
- 트럭&버스와 이륜차의 연료소비량은 사업자가 별도 조사 입증 필요

외부사업 등록유형 비교

구분	단일 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일반	소규모	극소규모		
사업규모	3,000톤 초과	100톤 초과 3,000톤 이하	100톤 이하	소규모 및 극소규모 사업 대상 - 소규모 : 15,000톤 이하 - 극소규모 : 500톤 이하	제한 없음
모니터링 주기	매 2년	최대 인증유효 기간	최대 인증유효 기간	최대 인증유효 기간	단일 감축사업 기준과 동일
연간 예상 감축량	제한없음	3,000톤 이하	100톤 이하	· 묶음사업 : 소규모 및 극소규모 기준과 동일 · 단위사업 - 소규모 : 15,000톤 이하 - 극소규모 : 500톤 이하	일반사업 : 제한없음 - 소규모 : 3,000톤 이하 - 극소규모 : 100톤 이하
추가성	· 60,000톤 이하 - 법적, 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초과 - 법적, 제도적 추가성 - 경제적 추가성	법적, 제도적 추가성		법적, 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이하 - 법적, 제도적 추가성 · 60,000톤 초과 - 법적, 제도적 추가성 - 경제적 추가성
사업구성	사업구성 불변			사업구성 불변	단위사업 추가 가능
외부사업 사업자	사업별 외부사업 사업자			· 대표 외부사업 사업자 · 개별 단위사업자	· 총괄 외부사업 사업자 · 개별 단위사업자
인증 유효기간	고정형 : 10년 이내, 연장불가 갱신형 : 최대 7년 이내, 2회 연장(총 21년 이내)				· 프로그램 감축사업 : 28년 이내 · 단위사업 - 고정형 : 10년 이내 - 갱신형 : 7년 이내, 2회 연장(총 21년 이내)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 절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거 외부사업 방법론에 대한 승인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절 차	수행주체
1단계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 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2단계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신청 접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외부사업 방법론 검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외부사업 방법론 검토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정·보완)	외부사업 사업자
	외부사업 방법론 검토 완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환경부 협의	환경부
3단계	심의 요청	환경부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상쇄등록부 등록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외부사업 승인 절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거 외부사업에 대한 승인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절 차	수행주체
1단계	외부사업 승인 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2단계	외부사업 승인신청 접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정·보완)	외부사업 사업자
	타당성평가 완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환경부 협의	환경부
3단계	심의 요청	환경부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상쇄등록부 등록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절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거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절 차	수행주체
1단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외부사업 사업자
	제 3자 검증 (현장검증)	검증기관
	검증 조치사항 통보 및 검증보고서 발행	검증기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2단계	온실가스 감축량 승인신청 접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결과 통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정·보완)	외부사업 사업자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검토 완료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환경부 협의	환경부
3단계	인증 심의 요청	환경부
	인증 심의	인증위원회
	인증 심의결과 통보 및 상쇄등록부 등록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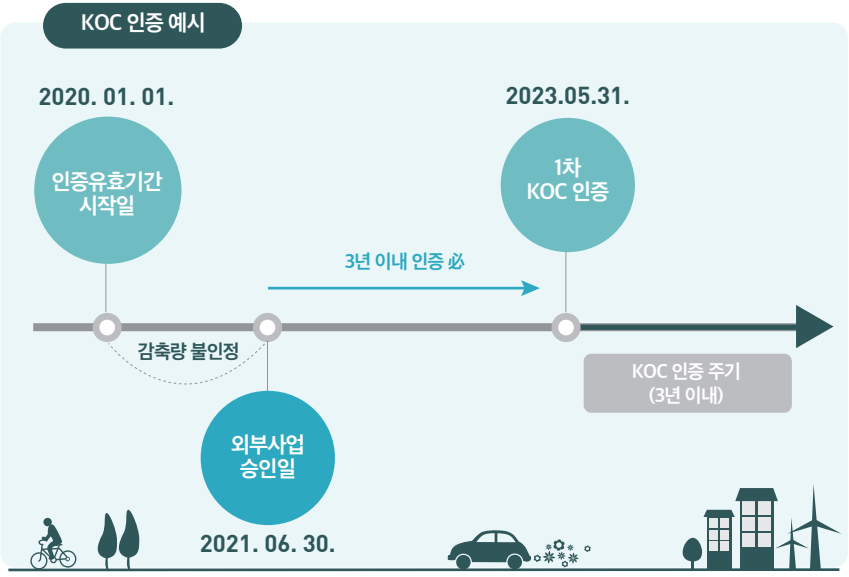
제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상쇄제도 전망

외부사업 승인 기준 변경

- **(외국 사업)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은 국내 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CDM 사업**에 한하여 승인
  - 다만, 제3차 계획기간 중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감축기제**가 마련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는 **해당 기제에 따른 감축사업**만을 **외부사업으로 인정***
    * 외부사업으로 既 승인된 외국에서 시행된 CDM 사업은 해당 기제에 따른 감축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외부사업으로 계속 인정

- **(KOC 인증 요건 변경) 외부사업 승인일* 또는 CDM 등록일 이후 발생된 감축량**에 한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KOC 인증**
  * 제3차 할당계획 수립 당시 외부사업 승인 신청된 사업은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발생된 감축량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KOC 인증 신청한 경우 ⇒ **일반 감축사업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을 3년 이내로 KOC 인증 필요)**



소규모(3,000 tCO2-eq) 이하, 산림분야는 신청 기한 미적용

제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상쇄제도 전망

인증일부터 2년 내 KC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 인증된 KOC의 유효기간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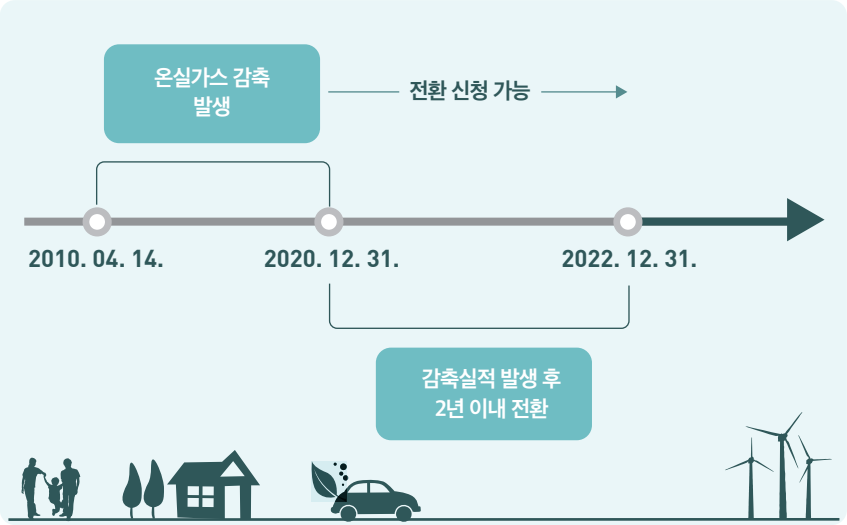
외국에서 발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사업현황 및 감축량 발생·관리 내역**이 **입증**되는 부분에 한함

- **(KCU 전환 기준 변경) 인증된 KOC**는 국가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 **인증일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KCU**로 전환

  ('10. 4. 1. ~ '20. 12. 31. 인증분*) '22. 12. 31.까지 전환 신청 시에만 승인

  * 외국 감축량의 경우에는 '16. 6. 1. ~ '20. 12. 31. 인증분

  ('21. 1. 1. 이후 인증분) 인증일부터 2년 내 전환 신청 시에만 승인



-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변경)** 제3차 계획기간의 이행연도별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는 **'할당대상업체별로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까지 인정

- **(공공재원 투입 사업)** 공공부문 등의 외부사업 승인기준 강화 및 제3차 할당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 및 세부사항은 '외부사업 지침'에서 규정

FAQ

Q1 갱신사업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에 갱신을 해도 되나요?

아니오. 최소 6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침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전까지는 갱신신청을 해야하며, 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갱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2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만 외부사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 실시 이전에도 외부사업으로의 등록은 가능합니다. 외부사업은 사업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 단, 외부사업으로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이 될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Q3 할당대상업체가 아니어도 외부사업을 통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할당대상업체가 아니어도 외부사업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며,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실적을 발급받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4 수송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부재 시 사업추진 가능한가요?

방법론이 없다면 외부사업 추진이 불가능 합니다. 단, 외부사업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신규방법론을 개발하거나, 유사 기 등록 방법론을 개정한 이후에는 외부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Q5 인증실적(KOC)은 어떻게 거래할 수 있습니까?

인증실적(KOC)는 배출권거래소(KRX)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 간 협의를 통해 장외에서 거래도 가능합니다. '20년 10월 기준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톤 당 약 30,000원이며, 시장 내 거래에 따라 단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http://marketdata.krx.co.kr/mdi

Q6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 외부사업이 가능한가요?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CDM 사업의 경우에는 조직경계 내부에서 시행된 경우에도 외부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어 정의

NO	구분	정의
1	외부사업 인증실적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부문별 관장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증한 감축량
2	모니터링	외부사업 사업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
3	검증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활동
4	배출량 인증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구성하는 위원회
5	방법론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
6	사업 시작일	사업 시작일은 2010년 4월 14일 이후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외부사업으로 등록가능(계약일, 최초지출일, 실행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7	추가성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법 및 제도적, 경제적 측면)
8	타당성평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부합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프로세스
9	검증기관	환경부가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0	감축량 인증	등록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문서화된 프로세스
11	상쇄등록부	외부사업 방법론, 외부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12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을 의미
13	인증 유효기간	사업계획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계산되며, 사업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갱신형(7년, 연장2회) 또는 고정형(10년)
14	외부사업 사업자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
15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고시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16	청정개발체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는 Annex1 국가(선진국)가 Non-Annex1 국가(개발도상국)에온실가스감축사업실행을위한기술및자금을 지원하여 달성한 실적을 Annex1 국가의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17	불확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

EMISSION TRADING SCHEME CARBON OFFSET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생활 속 이동수단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389